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1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한정애·김준형·서영교

이학영 · 송옥주 · 민형배

김주영 · 김재원 · 김영배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이는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을 "비용(이하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 각 호에 규정된비용은"을 "의정활동비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구금 중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

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의정활동비등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구금기간에 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u>비용</u> 을 지급한다.	비용(이하 "의정활동비등"
	<u>이라 한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	② <u>의정활동비등은</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	
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	
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등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⑤ 지방의회의원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소급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